

『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9년 9월 28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9년 9월 28일

라. 상정일자 : 2009년 10월 9일

제14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강 재 용

나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 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조문 정비
 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개정('09. 4. 27 시행)에 따른 조례 개정
 - 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및 동법시행령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공유재산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명칭 변경
(안 제5조, 안 제18조, 안 제22조, 안 제23조)
 - 잡종재산 → 일반재산
 - 행정·보존재산 → 행정재산

-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공동시설을 공유재산에 설치한 경우 사용료·대부료 감면 (안 제32조)
 - 사용료·대부료의 80% 감면

라. 참고사항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
- 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
- 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배 정 미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상위법령 개정과 관련 법령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임

○ 주요 내용은

- 공유재산 분류체계 개선에 따라 “잡종재산”을 “일반재산”으로, “행정·보존재산”을 “행정재산”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
-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공동시설을 공유재산에 설치할 경우 사용료·대부료의 80%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임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”이 2009년 4월 27일 개정됨에 따른 명칭변경과 “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”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